

지역사회참여 규정

사규번호	규정 2026-2
담당팀	인사총무팀
제정일자	2026.06.12
개정일자	-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태영건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하고,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-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본사, 국내외 현장 및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②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 활동으로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및 관련 활동에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“지역사회”라 함은 회사의 본사, 사업장, 건설현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말하며, 개인 및 지역 기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.

제4조 (지역사회 참여 이행)

회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①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과 상생 협력
- ②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사전 검토 및 관리
- ③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
- ④ 건설업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가치 창출
- ⑤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투명성,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
- ⑥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의 준수

제5조 (지역사회 참여 활동)

회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- ① 사업장 인근 도로, 시설, 환경 등 지역 기반시설 개선 지원
- ② 현장 주변 환경정화, 소음·분진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
- ③ 현장 주차장 개방, 지역 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 편의 제공 활동
- ④ 취약계층 물품 지원, 봉사활동, 헌혈 등 사회공헌 활동
- ⑤ 재난·재해 발생 시 자재, 인력, 장비 등을 활용한 긴급 복구 및 지원 활동
- ⑥ 지역 주민, 지역협의체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소통 및 협력 활동
- ⑦ 기타 지역사회 상생 및 공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

제6조 (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리스크 관리)

- ① 회사는 사업장 운영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련 의견, 민원 및 주요 이슈를 검토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이슈 검토 결과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계획 수립 및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 (모니터링 및 개선)

- ① 회사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성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, 향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및 관련 성과를 필요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,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.

제8조 (기록 관리)

회사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추진 실적, 의견수렴 결과, 주요 민원 및 대응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기록·관리할 수 있다.

제9조 (부칙)

- ① 이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